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선거규칙

(2020 년)

차 례

제1장 총칙……3
제 1 조 적용범위……3
제 2 조 원칙과 의무……3

제2장 선거위원회……4
제 3 조 기본원칙……4
제 4 조 구성……5
제 5 조 선거위원회의 의무……5
제 6 조 회의, 회의소집에 필요한 위원수, 결정……6

제3장 후보자……6
제 7 조 후보자자격……6
제 8 조 집행위원회선거후보자문건제출과 심의……7
제 9 조 집행위원회선거후보자들의 상소절차……7
제 10 조 협회의 기타 기구선거후보자들의 절차……8
제 11 조 후보자공식명단……8

제4장 투표……9
제 12 조 선거총회의 소집……9
제 13 조 선거총회기간 선거위원회의 의무……9
제 14 조 투표용지……9
제 15 조 투표함……9
제 16 조 투표……10

제5장 계산……11
제 17 조 일반원칙……11

제 18 조 무효투표용지……11
제 19 조 계산과 계산결과발표……11

제6장 마감조문……12
제 20 조 문건보관 및 기밀엄수……12
제 21 조 규칙에 밝히지 못한 문제……12
제 22 조 효력발생……13

제1장 총칙

제 1 조 적용범위

1. 이 규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이 아래부터는 ≪협회≫라고 함)의 규약에 따라 협회집행위원회와 법률집행기구,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검사위원회 성원들의 선거에 적용된다.
2. 이 규칙은 또한 협회성원단체(이 아래부터는 ≪성원단체≫라고 함)의 규약에 규제되여있는 경우 해당 성원단체의 선거에 적용할수 있다. 이 경우 성원단체의 규약에 이 선거규칙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규제하여야 하며 협회선거위원회가 성원단체의 선거과정을 감독할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제 2 조 원칙과 의무

1. 선거의 전 과정에 권력의 분리, 독자성, 투명성, 리해관계 충돌의 방지와 같은 훌륭한 관리의 일반원칙들을 례외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2. 협회는 협회규약에 규제된 기한내에 선거와 관련한 규정 및 지도서들을 명백히 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3. 선거에 대한 제 3 자의 온갖 부당한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4. 협회는 이 규칙이 협회규약과 국제축구련맹, 아시아축구련맹의 규약, 규정, 지시, 결정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협회는 선거가 진행되기 30 일전까지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 축구련맹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선거하여야 할 인원수, 임기, 선거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효력을 가지고있는 협회선거규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협회는 제 3 자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국제축구

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협회규약과 규정들에 따로 밝히지 않는 한 협회의 해당 기구성원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2장 선거위원회

제 3 조 기본원칙
1. 선거위원회는 협회규약과 이 규칙에 준하여 선거과정을 감독한다.
2. 선거위원회 성원은 그 어떤 정부기관의 직무도 가지고있지 말아야 하며 임기중에 협회의 다른 기구선거에 후보자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 선거위원회 성원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과 결정채택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
1) 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직계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협회의 규률 및 륜리규정에 규제된 리해관계충돌의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선거위원회 성원이 우의 요구조건들에 부합되지 않거나 임의의 리유로 하여 선거위원회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이 규칙 제 4 조 3.에 따라 다른 성원으로 교체한다.
5. 선거위원회 성원은 4 년을 임기로 협회총회에서 임명한다.
6. 선거위원회 성원은 3 기(련임 또는 비련임)까지 재임명될수 있다.
7. 선거위원회 성원은 언제나 정직하게 활동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서 최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성

1.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 명

2) 부위원장 1 명

3) 위원 3 명

2. 이외에 총회에서 3 명의 후보위원들을 임명할수 있다.

3.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할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참가할수 없는 경우 위원이 대리한다. 위원이 참가할수 없는 경우에는 후보위원이 대리한다.

4. 선거위원회는 위원들가운데서 1 명을 선정하여 위원회서기로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보장 및 행정사업을 말아한다. 서기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서기국에 방조를 요청할수 있다.

5.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전문가자격을 가진 성원이여야 한다.

제 5 조 선거위원회의 의무

선거위원회는 총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조직과 운영, 감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말아한다.

1. 협회규약과 규정들, 특히 이 규칙을 철저히 리행한다.

2. 협회기구선거와 관련한 규정과 지도서들이 협회의 선거규칙과 규약, 국제축구련맹의 규약과 규정, 지시, 결정들에 부합되도록 한다.

3. 선거와 관련하여 협회규약에 규제된 시한부들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성원단체들과 필요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들, 보도 및 사회계에 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다.

5.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기관들과의 사업을 진행한다.

6. 후보자신청과 관련한 사업(후보자선출시작, 자료배포, 심의,

공식명단공개 등)을 맡아한다.
7. 서기국의 방조하에 협회규약에 준하여 투표자(대표)명단을 작성한다.
8. 공증기관과 련계하여 투표자(대표)들의 신분을 확인한다.
9. 선거 및 투표를 주관한다.
10. 선거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기타 모든 사업을 맡아한다.

제 6 조 회의, 회의소집에 필요한 위원수, 결정
1.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토의 및 결정권을 가진다.
2. 선거위원회는 50%가 넘는 성원들이 참가하여야 토의를 진행할수 있다.
3. 선거위원회는 투표에 참가한 성원들중 50%가 넘는 성원들이 지지하여야 결정을 내릴수 있다. 대리투표나 서신을 통한 투표는 접수되지 않는다. 지지, 반대표수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결정투표를 한다.
4. 모든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하며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서기가 수표한다.

제3장 후보자

제 7 조 후보자자격
1. 협회기구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자격은 협회규약에 규제한다.
2. 선거위원회는 이 규칙과 협회규약에 밝혀져있지 않는 후보자 자격이나 기타 기준사항들을 따로 제정할수 없다. 선거위원회는 오직 해당 자격에 부합되는가를 증명할수 있는 문건들을 요구할수

있다.
3. 선거위원회는 협회규약에 따르는 후보자자격기준들과 제출하여야 하는 문건목록을 공개한다.

제 8 조 집행위원회선거후보자문건제출과 심의
1. 집행위원회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선거총회 50 일전까지 협회서기국에 후보자문건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서기국은 접수한 후보자문건들을 즉시 선거위원회 서기에게 넘겨준다.
2. 문건제출마감날자가 지난 후 3 일내에 선거위원회는 필요한 문건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5 일내에 문건제출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때까지도 문건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은 제명한다.
3. 선거위원회는 문건제출마감날자가 지난 때로부터 15 일내에 후보자문건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후보자들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집행위원회선거후보자들의 상소절차
1.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오직 선거상소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다른 기관, 특히 정부기관에는 상소할수 없다.
2.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거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5 일내에 협회서기국에 상소문건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서기국은 접수한 상소문건을 즉시 선거상소위원회에 전달한다.
3. 선거상소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와 문건들을 접수하기로 결정할수 있다.
4. 상소가 제기되면 선거상소위원회는 접수받은 때로부터 7 일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5. 선거상소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위원 2 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임명한다. 이외에 2 명의 후보위원들을 함께 임명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법률전문가자격을 가진 성원이여야 한다.
6. 선거상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 10 조 협회의 기타 기구선거후보자들의 절차
1. 집행위원회는 협회의 법률집행기구와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검사위원회 후보자문건을 선거총회날자 50 일전까지 서기국에 보내야 한다.
2. 선거위원회는 후보자문건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15 일내에 후보자들이 해당 직무의 공식기준에 부합되는가를 서기국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1 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확인할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추가후보자들을 추천할수 있다.
3. 우와 같은 기구성원들의 선거는 일괄선거로 진행할수 있다. 선거총회시작시 대표들에게 해당 기구의 후보자명단이 밝혀진 투표용지를 배포한다.
4. 선거과정에 대표들은 자기 좌석에서 이동식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투표함은 1 명의 투표검사원이 대표좌석을 따라 운반하며 1 명의 선거위원회 위원이 가까이에서 감시한다.
5. 모든 대표들이 이동식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선거위원회는 모든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총회대표들에게 발표한다.

제 11 조 후보자공식명단
1. 협회기구선거에 나서게 될 후보자들의 공식명단을 선거총회날자 20 일전까지 성원단체들에게 보내준다.
2. 필요에 따라 후보자공식명단을 해당 정부기관들에 참고로

보내줄수 있다.

제4장 투표

제 12 조 선거총회의 소집

협회의 선거총회는 협회규약에 따라 소집한다.

제 13 조 선거총회기간 선거위원회의 의무

선거총회기간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투표자(대표)들의 신분을 확인한다.
2. 선거과정을 감독한다.
3. 투표용지를 계산한다.
4. 투표용지가 유효한가 또는 무효한가에 대하여 결정한다.
5. 선거절차와 관련한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결정을 내린다.
6. 선거결과를 발표한다.
7. 필요한 경우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조직한다.

제 14 조 투표용지

1. 협회서기국이 선거위원회의 감독하에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용지를 깨끗하고 알아볼수 있게 인쇄하여야 한다.
2. 투표의 매 단계마다 투표용지의 색갈을 다르게 정하여야 한다.

제 15 조 투표함

1.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가능한 투명한것)을 개봉한 상태에서 총회대표들에게 보여준다. 다음 투표함의 뚜껑을 닫고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잘 볼수 있는 가까운곳에 놓는다.
2. 투표가 진행되는 전 기간 선거위원회의 1 명의 성원이 투표함을 감시한다.

제 16 조 투표
1.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규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선거절차(투표함,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유효성, 계산, 필요득표수,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유권대표들을 차례로 선거가 진행되고있는 총회장앞으로 나오도록 호출한다.
3. 호출된 대표들은 총회장앞으로 나와 수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4. 대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한다. 이때 손전화기나 사진기, 기타 록화장치들의 사용을 금지한다.
5.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선거등록부에 수표한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6. 대표들의 투표가 전부 끝나면 즉시 계산으로 넘어간다. 모든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선거위원회의 1 명의 성원이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용지들을 꺼낸다.
7. 다음 계산을 시작한다.

제5장 계산

제 17 조 일반원칙

1. 선거위원회 성원들만이 계산에 참가할수 있다. 계산의 전 과정(투표함개봉, 투표용지계산, 지지 및 반대표수계산 등)을 모든 대표들이 똑똑히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및 투표의 유효성, 회의록초안작성, 결과발표, 계산과 관련한 기타 문제를 놓고 의견상의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것으로 된다.

제 18 조 무효한 투표용지

1. 다음의 경우 투표용지를 무효한것으로 본다.

1) 선거위원회가 정한 공식마크가 없는 투표용지

2) 후보자의 이름외에 다른 글을 써넣은 투표용지

3) 알아볼수 없거나 글이 지워진 투표용지

4) 임의의 표식을 한 투표용지

2.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무효로 판정된 투표용지뒤면에 무효 리유를 쓰고 수표를 한다.

제 19 조 계산과 계산결과발표

1. 투표함을 개봉하면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투표용지수를 계산하면서 투표용지가 유효한가를 검사한다. 투표용지수가 발급된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가 유효한것으로 본다. 발급된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가 무효로 선언되며 즉시 우에서 밝힌 절차대로 투표를 다시 시작한다.

2. 투표용지수가 확인되면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부류별로 매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3. 2 단계(또는 그이상의)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우에서 밝힌 절차대로 투표를 반복한다. 이때 총회대표들에게 2 단계(또는 그이상의)투표에 적용되는 규약조항(필요득표수의 변경, 후보자제외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준다.
4. 선거의 매 단계가 끝날 때마다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그 결과를 총회대표들에게 공식발표한다.
5. 계산된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수표를 받아 봉인한다. 이 봉투들은 서기국이 보관하며 총회가 끝난 후 10 일이 지나면 처분한다.

제6장 마감조문

제 20 조 문건보관 및 기밀엄수
1. 선거위원회와 선거상소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접수하였던 모든 공식문건을 협회서기국에 넘겨주어 보관하도록 한다.
2. 선거위원회와 선거상소위원회 성원들은 선거과정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자료와 문건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엄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칙에 밝히지 못한 문제
1. 선거총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협회의 규약, 규정들에 밝히지 못한 모든 행정실무적문제는 선거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당 결정은 최종적인것으로 된다.
2. 선거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협회의 규약, 규정들에 밝히지 못한 모든 문제는 선거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당 결정은 최종적인것으로 된다.

제 22 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2020 년 9 월 21 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총회에서 채택되였으며 협회규약 제 34 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 리룡남
서기장 김장산